

#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66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(2010. 12. 20)

상정 및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시계획과장 임명호)

### □ 제안이유

○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실시변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경기도(토지정보과-29264호, 2010.9.8)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고지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의2).

### 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문	답 변
○ 실비금액이 1일 3천원이면 시간과 노고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 상향할 의향은 없는지?	○ 실비 지급금액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임.
○ 세대별로 직접방문해서 안내고지를 하게되면 오피스텔 및 출타중인 가정에 대해 고지를 못할 경우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?	○ 직접 전달이 안될 경우에는 우편으로 고지할 예정이며, 누락없이 철저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.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조례 제 호

##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실비변상) 시장은 영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고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